

의안번호	제 395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7월 일 (제 282 회)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9년 7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95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9년 7월 2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- 위탁사무의 범위를 실질적인 운영에 일치시키고 추가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민간위탁 대상사무 추가(안 제4조제3항 별표)

<경제정책과 소관사무>

- 기능경기대회 위탁사무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

- ▶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·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

- 구인난과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맞춤형인턴제 운영 위탁 근거

- ▶ 맞춤형인턴제 운영사무에 대하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탁기관으로 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추가

3. 개정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, 제151조 외 개별법

4. 조례안 : 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6. 관련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민간위탁사무(제4조3항 관련)

대상실과	일련번호	위탁 대상 사무명	위탁 대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성과관리 담당관 정보화 담당관	1	○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	콜센터 구축 및 운영대행 전문기관	지방자치법 제104조
	2	○ 인터넷디지털방송사업에 관한 사항 - 인터넷 디지털방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 - 영상콘텐츠 제작·공급 - 도정실황 입체적인 영상홍보 - 기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사항 등	(재단법인)충청북도 지식 산업진흥원	지방자치법 제104조
경제정책과	3	○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-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-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 -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부정행 위자에 대한 제재 - 전국기능경기대회 훈련·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	한국산업인력공단충북 지사	기능장려법 제11조, 제13조 제15조,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6조
	4	○ 맞춤형 인턴제 운영 사무	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	지방자치법 제104조
전략산업과	5	○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-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	과학기술관련법인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
	6	○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 - 도 공예품경진대회	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	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 동법시행령 제54조
기업지원과	7	○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사무 - 중소기업우수상품전 개최	청주상공회의소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	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, 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
	8	○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(다만,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임대사무를 포함한다.)	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	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1조, 동법 시행령 제5조

신·구조문대비표

【별표】

민간위탁사무

현 행					개정안				
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 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	대상 실과	일련 번호	위탁대상사무명	위탁대상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경제정책과	1~2	(생략)			경제정책과	1	(현행과 같음)		
	3	○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			경제정책과	3	○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		
		-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					(현행과 같음)		
		-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 지급					(현행과 같음)		
		-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					(현행과 같음)		
		<신설>					- 전국기능경기대회 후원·참가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		
		<신설>				4	○ 맞춤형 인력제 운영 사무	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	지방자치법 제104조
	4~7	(생략)				4~7	(현행과 같음)		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 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범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51조 (사무의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위탁의 당사자가 시·도나 그 장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
2.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
3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

4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

5.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사무위탁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과 협의하여 그 사실을 고시하고, 제1항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사무가 위탁된 경우 위탁된 사무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조례나 규칙은 규약에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□ 기능장려법

제11조 (국내기능경기대회) ① 노동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상호 이해의 증진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는 노동부장관이 개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시·도지사가 개최하는 지방기능경기대회로 구분한다.

③ ~ ⑤ <생략>

제13조 (상금지급) ① 노동부장관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,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하여 각각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 (부정행위자 제재) ① 노동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정행위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입상을 취소하고 취소일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.